제18판 영양사시험문제집 정오표 (1, 2쇄) - 수정13

페이지	오	정
1장 영양학 (p.21 문11 해설)	탄소수 10개로 이루어진 지방산은 짧은사슬지방산에 속한다.	탄소수 10개로 이루어진 지방산은 중간사슬지방산에 속한다.
1장 영양학 (p.37 문76)	(1)	(2)
〃 (p.53 문65 보기 3)	~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한다.	~단백질 필요량이 감소한다.
〃 (p.93 문41 해설)	아연에 비하여 철이나 구리의 비율이 높을 때 아연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.	아연의 섭취가 철과 구리에 비해 비율이 높을 때 철과 구리의 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.
〃 (p.106 문1 문제)	내에서 수분의 기능으로 옳은 ~	체내에서 수분의 기능으로 옳은 ~
〃 (p.177 문4 보기 3)	(3) 노동시 에너지 소비량 능가에 따라 ~	(3) 노동시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따라 ~
2장 생화학 (p.213 문2)	(1)	(4)
〃 (p.233 문11)	(4)	(5)
〃 (p.244 문7 해설)	~ RNA 합성은 세포질에서, ~	~ RNA 합성은 핵에서, ~
3장 생리학 (p.291 문36)	(2)	(4)
4장 식품위생학 (p.2 문2)	(3)	(2), (3)
5장 영양교육 (p.87 문12 보기 4)	(4) 식이섬유의 과다섭취	(4) 식이섬유의 섭취저하
〃 (p.88 문 15 보기 5)	(5) 평균필요량은 대상집단에서 건강한 ~	(5) 권장섭취량은 대상집단에서 건강한 ~
〃 (p.92 문 26)	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성인을 ~	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성인을 ~
〃 (p.137 문 26)	(5)	(4), (5)
〃 (p.141 문 4)	(1)	(2)
〃 (p.142 문 7)	현재 문제	문제 삭제 (보건의식 행태조사는 현재 건강설문조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의 변화도 생겼습니다.)
6장 식사요법 (p.179 문21 보기 3)	(3) 형 간염은 식품이나 ~	(3) B형 간염은 식품이나 ~
〃 (p.201 문2 해설)	~ 체중/신장2[kg/m2]이므로 65/1.72를 계산하면 ~	~ 체중/신장^2[kg/m^2]이므로 65/1.7^{2}를 계산하면 ~
7장 식품위생법규 (p.289 문 7)	(3)	(3), (4)
7장 식품위생법규 (p.309 문 11)	(2)	답 없음
8장 단체급식 (p.7 문23 보기 1)	(1) 인건비가 절약된다.	(1) 인건비가 증가된다.
8장 단체급식 (p.30 문10)	(5)	(1)
〃 (p.37 문41)	(1)	(4)

″ (p.39 문48)	(3)	(4)
″ (p.48 문22 해설, 답)	문제 20번 해설 참조 (4)	문제 29번 해설 참조 (1)
11장 식품미생물학 (p.281 문17 해설)	*Lactobacillus bulgaricus*는 버터의 starter로 이용된다.	*Lactobacillus bulgaricus*는 주로 발효유, 요구르트의 제조에 이용된다.

※ 7장 식품위생관계법규 – 309쪽 11번 문제

문제집을 집필할 당시에는 (2) 보건소장이 답입니다만, 법 제86조 ①이 2013년 5월 22일에 개정되어 시장, 군수,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, 6개월 후인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
308쪽 9번 문제도 법규의 개정으로 당연히 변경되었습니다. (86조 ② 참고)

"참고 – 현행 법규"

제86조(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5.22〉

1.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(檢案)한 의사 또는 한의사
2.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0.1.18, 2013.3.23, 2013.5.22〉